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2024.11.29.)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가능(안 제14조제8항)

-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
→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,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행정안전부예규) 2024. 11.

29. 일부개정을 통해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중 특별휴가에 관한 제7조의7은 제7항에서 모성보호시간을, 제8항에서 육아시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○ 한편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,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는 2024. 11. 29. 일부개정 전에 모성보호시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·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나,

-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제도를 유연화하고자 2024. 11. 29. 일부개정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을 삭제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외근무가 가능해졌음.

○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이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